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34호 2022. 7.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451호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452호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삼척시 조례 제1453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9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2
- 삼척시 고시 제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 삼척시 고시 제9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9
- 삼척시 고시 제100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2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5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3
- 삼척시 공고 제760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 27
- 삼척시 공고 제765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 삼척시 공고 제766호 2022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공고
----- 35
- 삼척시 공고 제768호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 ----- 38

공 람									
--------	--	--	--	--	--	--	--	--	--

제23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박상수

2022년 7월 8일

삼척시 조례 제1451호 (의원발의)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삼척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삼척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셧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 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원)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박상수

2022년 7월 8일

삼척시 조례 제1452호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4제6항”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직 (Date)
	생년월일		
	주소(전체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경력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분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3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의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분임에 따른 개인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삼척시장 귀하

비고

- 본인을 위촉해 활동할 필요 중인 신청인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신청한다.
-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 경력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022.07.08 10:00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성 (HANGUL)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력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임명에 따른 책임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나이 (周岁)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6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물

-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0.5cm 이내의 촬영한 최근 정면 상반신 단영상(3 × 4센티미터) 사진 2매
- 주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사용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면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임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임 장소				
⑧ 직무수행업무				
<p>「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면지 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면지도원이 금면구역 등에 출임하여 단독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삼척시장 직인</p>				

제23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박상수

2022년 7월 8일

삼척시 조례 제1453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2 -9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창호리 79-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53-16	20220705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9-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53-16	20220705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시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9-3	1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53-16	20220705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 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덕 군도5호선(산양~사곡) 도로정비공사(시도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삼척시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변경	시도	제5호	산양~사곡	강원도 삼척시 산양리 ~ 강원도 삼척시 사곡리	4,960㎡	강원도 삼척시 산양리 1321	강원도 삼척시 산양리 1349-1		0.62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원덕 군도5호선(산양~사곡) 도로정비공사 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3.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고시 완료일까지

○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48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6.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구간	면적 (㎡)	연장 (m)	지형도면 고시이유
변경	시도	제5호	·기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21 ·종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49-1	4,960	620	원덕 군도5호선(산양-사곡)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고시

○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삼척시 건설과 토목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군5B	8	보조 간선 도로	5,588	원덕읍 산양리 673-2도	원덕읍 사곡리 산84-1임	일반 도로		2010. 7. 16. (삼척시고시 제48호)	2020. 8. 14. (삼척시고시 제139호)
변경	소로	2	군5B	8	보조 간선 도로	5,588	원덕읍 산양리 673-2도	원덕읍 사곡리 산84-1임	일반 도로			사곡길, 시도 5호선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21
- 종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49-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덕 군도5호선(산양~사곡) 도로정비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군5B) 개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 연 장 : L = 620km
- 폭 원 : B = 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삼척시장(건설과장)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도로구역결정(변경) 편입용지조서와 동일함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축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서류 : 1. 토지세목조서(붙임)

2.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열람장소 비치)

[붙임1]

토지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권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내용
총 계				190.673	671					
1	원덕읍 신양리	1319	답	1,049	97	서*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3길 ***			
2	"	1367-26	천	88	88	건설부	국			
3	"	1336-2	답	51	10	김*각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			
4	"	604	천	187,150	319	건설교통부	국			
5	"	1337-6	답	1,653	11	황*현	삼척시 교동로 ***			
6	"	1337-24	천	411	103	건설부	국			
7	"	1349	대	271	43	박*선	경북 울진군 매화면 금매길 ***			

끝.

삼척시 고시 제2022 -9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610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5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610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5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610	20220708	신규부여	20090626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4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터로 1966-46	20220708	신규부여	20090626	신규부여	20090626	지형지물(두터산)명 칭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10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지형도면 고시

- 「도로법」 제29조의 의제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삼척시 고시 제2022-98호, 2022. 7. 7.)로 변경·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사항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삼척시장

가. 시설명: 소로2-군5B(시도 5호선, 사곡길)

나. 위치: 원덕읍 산양리 1336-1번지 일원

다. 규모: 폭 8m / 연장 5,588m

라. 지형도면: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75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07.04. ~ 2022.07.18.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2.07.1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상○
	주소 (대장상주소)	정하4리2반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위치-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1-31외1필지	
	1층: 65.52㎡ 창고(목조/아연즙)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04.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22-75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 7.11. ~ 2022. 7.17.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2. 7.18.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종○
	주소 (대장상주소)	이천1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274번지
		1층: 46.28㎡ 주택(목조/아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04.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2 - 760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22/2023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칭	어업면허 처분현황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포획 채취물	비고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면허일자				
정치망	제2021-4호	2021.11.18.~ 2031.11.17.	10.5ha	2022.7.5.	초곡리 지선	김*우	방어, 오징어, 도미, 꺾치, 기타	대체개발 (어장 이동)
정치망	제2014-2호	2014.7.23.~ 2024.2.4.	22.5ha	2022.7.5.	장호리 지선	3명대표 임*순	방어, 오징어, 도미, 꺾치, 기타	대체개발 (어장 이동)
정치망	제2014-3호	2014.7.23.~ 2022.8.20.	5.0ha	2022.7.5.	용화리 지선	2명대표 임*순	방어, 오징어, 도미, 꺾치, 기타	대체개발 (어장 이동)
정치망	제2019-2호	2019.7.23.~ 2029.7.22.	4.0ha	2022.7.5.	초곡리 지선	심 *	방어, 오징어, 도미, 꺾치, 기타	대체개발 (어장 이동)

삼척시



삼척시 공고 제2022- 765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삼척시장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조문 내용에 맞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교통약자 유형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반영

3. 입법예고기간 : 2022. 7. 6. ~ 7. 27.(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교통과

- 전 화 : (033) 570-3939

- FAX : (033) 570-3145

5. 그 밖의 사항

-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접수 번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귀하(주소 :)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량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	---	--------------------------------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결정사유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붙임 1]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조례 제명 :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연락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766호

2022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공고

연근해 어선 현대화로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및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7. 6.

삼척시장

1.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10. (5일간)
2. 접수처 : 삼척시 해양수산과
3. 사업명 : 2022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4. 신청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5. 사업자격 및 제외대상
 -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6.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어선 또는 일반 연안·근해어업 어선으로 건조
 - * 연안어업 4개 업종(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구획어업 1개 업종(패류형망) 및 근해어업 5개 업종(근해채낚기, 근해통발,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 선령, ② 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7.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자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8.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융)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의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할 경우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9. 문 의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033-570-34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 - 768호

양식업면허 처분 공고

2022/2023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양식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 양식업 면허 처분

양식업의 명칭	양식업의 방	양식업면허 처분현황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비고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복합 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제2022-1호	2022.6.12.~ 2032.6.11.	5.0ha	궁촌리 지선	김진규	대체개발 (어장 이동)

삼척시

